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5. 3. 3.

총무재무 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2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7회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95. 3. 3.)상정의결

##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최영명

## 가. 제출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1995. 1. 16. 조례 제3156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토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전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외 2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외 3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외 7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되고, 상위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95. 1.

16. 조례 제3156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과 달라진 제규정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5% 또는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사항과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는 사항을 안 제21조에 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규정이 '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범위와 기간·이자율을 자치구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김문태 간사) :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 외 일반점유자에게도 혜택이 되도록 조례 수정이 가능한가?

- 답변(최영명 재무과장):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합법성등을 연구검토 하여야 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5
----------	-----

제출일자 : 1995년 2월 15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1995. 1. 16. 조례 제3156호)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개정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외 2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외 3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규정함(안 제21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이관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 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외 7

####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 제15조
- 지방재정법(1991. 12. 31. 법률 제4466호) 제83조제2항
- 지방재정법시행령(19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 제95조, 제100조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1995. 1. 16. 조례 제3156호) 제22조

#### 4. 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 불필요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찬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전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 ② 영 제10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전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 ③ 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제11호·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
3.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제10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현 행	개 정 안
2.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6호 · 제8호 내지 제11호 · 제13호 · 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게 매각할 때
3.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4.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도시재개발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전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5.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개량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 · 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전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마포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업무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제대출금리를 준용한다.	②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전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③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 제6호 · 제10호 · 제11호 ·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
	3.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 ·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